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여신실행방법	<input type="checkbox"/>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중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 용도와 필요 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여신실행방법	<input type="checkbox"/>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삭 제) <input type="checkbox"/>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해당사항없는 항목 삭제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	<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 여신개시일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에 선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어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 여신개시일로부터 ()개월이내에, 그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여신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지급합니다.(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	<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 여신개시일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에 선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여신실행시에 개별 매출채권 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 여신개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여신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지급합니다.(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구 수정
(신 설) 제2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① 제1조의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시장금리 또는 단기코픽스금리에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① 한도거래여신의 경우에는 약정기한 이내에서 1회의 회전기간 및 개별여신의 여신기간을 달리 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본인은 여신과목의 한도 범위 내에서 개별여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정한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때에도 이 약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③ 분할취급 대출은 건별로 각각 매 대출실행일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여신거래약정서 (기업용) 약관 반영
제2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① 제1조의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에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제2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① 제1조의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에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여신거래약정서 (기업용) 약관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1. <u>대출금 실행 직전 영업일의 91일물CD유통수익률, AAA등급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단기코픽스금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준금리로 적용합니다.</u></p> <p>2. 이 약정서의 91일물CD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수익률로 하며, 6개월물 금융채 또는 1년물 금융채의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 중 3개 채권평가회사 통합표의 수익률로 하고 단기코픽스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금리로 합니다.</p> <p>② 제1항의 시장금리 또는 <u>단기코픽스금리 연동대출의 경우 최초 ()개월간은 최초 약정금리를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매()개월마다 최초 대출상당일(최초 대출상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 말일) 직전 영업일의 시장금리 또는 단기코픽스금리를 기준금리로 하여 제1조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u></p> <p>제3조 중도상환해약금</p> <p>① 본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약정한 대출기일(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 이하 같음)전에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제 1 조의 중도상환해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② 대출잔여일수 등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도록 합니다.</p> <p>1. 「대출잔여일수」는 상환방법에 상관없이 상환일로부터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대출기간에서 경과일수(최초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일수)를 차감하여 구합니다.</p> <p>2.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약정한 대출기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 3년이 초과하더라도 3년(일수)으로 정합니다.</p> <p>3. 중도상환해약금은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이내로 적용합니다.</p> <p>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합니다.</p> <p>1. 대출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p> <p>2. 외화대출을 타 통화(원화 포함)로 전환하는 경우</p> <p>3. 담보물건의 공용수용 등 공익목적 국가사업 추진으로 인해 불가피한 기일</p>	<p>1.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란 원화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 실행 직전 영업일의 91일물CD유통수익률, AAA등급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AAA등급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단기코픽스금리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하고, 외화대출의 경우에는 LIBOR 1개월물, LIBOR 3개월물, LIBOR 6개월물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p> <p>2. 각각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는 아래의 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p> <p>가. 91일물 CD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수익률</p> <p>나. 6개월물 금융채 또는 1년물 금융채의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 중 3개 채권평가회사 통합표의 수익률</p> <p>다. 단기코픽스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금리</p> <p>라. LIBOR 1개월물 도는 LIBOR 3개월물 또는 LIBOR 6개월물은 IBA(ICE Benchmark Administration)가 고시하는 금리</p> <p>② 제1항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 연동대출의 경우 1조에서 정한 변동주기마다 최초 대출상당일(최초 대출상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 말일) 직전 영업일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를 기준금리로 하여 제1조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해당사항없는 조항 삭제</p>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u>전 상환의 경우</u></p> <p>4. <u>예금담보대출(은행의 예금, 적금, 부금, 금전신탁 수익권 등을 담보로 하여 전액 은행이 정한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합니다)을 기일 전 상환하는 경우</u></p> <p>5. <u>정책자금대출을 기일 전 상환하는 경우</u></p> <p>6. <u>기한이익 상실, 상계, 기업 구조조정 업무(Work-Out) 등으로 은행이 대출을 기일 전 회수하는 경우</u></p> <p>7. <u>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u></p> <p>제4조 지연배상금</p> <p>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9 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에는, 그 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5조 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p> <p style="text-align: right;">(생 략)</p> <p>제6조 감액·정지</p> <p>① 한도거래 및 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u>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곧 갚기로 합니다.</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3조 지연배상금</p> <p>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에는, 그 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③ <u>한도대출의 경우, 한도초과지급 및 이자원가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u></p> <p>제4조 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p> <p style="text-align: right;">(좌 등)</p> <p>제5조 감액·정지</p> <p>① 한도거래 및 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u>다음 각호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곧 갚아야 합니다.</u></p> <p>1. <u>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의 구체적인 사유</u></p> <p style="padding-left: 20px;">가.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여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외환유동성 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조 체상</p> <p>여신거래약정서 (기업용) 약관 반영</p> <p>조 체상</p> <p>조 체상</p> <p>여신거래약정서 (기업용) 약관 반영</p>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p> <p>제7조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p> <p>① 한도거래 여신의 경우 제 1 조에서 정한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p> <p>② 「<u>운용기간 중 여신평잔</u>」등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p> <p>1. 당좌대출 및 통장식 한도거래 대출의 「<u>운용기간 중 여신평잔</u>」은 전월 결산일 익영업일로부터 금월 결산일까지 매일의 적수에 대한 평잔입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text{매일의 적수} = \text{마감잔액} + [\text{일중 최고잔액} - (\text{개시잔액과 마감잔액 중 큰 금액})]$ </div> <p>2. 제 1 호의 대출 이외의 한도거래여신에 대한 「<u>운용기간 중 여신평잔</u>」은 미사용수수료 최종납입일의 익일부터 납입할 날까지의 매일의 잔액에 대한 평잔입니다.</p> <p>3. 「<u>약정한도평잔</u>」은 운용기간 중 약정한도의 평잔입니다.</p> <p>③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p>	<p><u>다. 은행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에 유동성 조절대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u></p> <p><u>라. 기타 위의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u></p> <p>2. <u>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의 구체적인 사유</u></p> <p>가. <u>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경우</u></p> <p>나. <u>경영실권자를 변경하여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어려운 경우</u></p> <p>다. <u>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u></p> <p><u>라. 신문, TV 등 공신력 있는 매스미디어에 본인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뉴스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u></p> <p>마. <u>본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u></p> <p>바. <u>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u></p> <p>사. <u>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u></p> <p>② (좌 등)</p> <p>(삭 제)</p>	<p>해당사항없는 조항 삭제</p>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1. <u>당좌대출 및 통장식 한도거래 대출은 결산일 익일 또는 약정해지일에 대출약정 한도금액 이내에서 대출원금에 가산합니다. 다만, 잔액이 예금일 경우에는 동 예금에서 차감합니다.</u></p> <p>2. <u>대출약정 한도금액 부족으로 수수료가 일부라도 원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곧 변제하거나 해당 모계좌에 변제를 위하여 입금하기로 하며, 입금된 자금은 부족한 수수료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u></p> <p>3. <u>제 1 호의 대출 이외에 이자원가일이 없는 한도거래여신은 한도내 개별대출 실행시 또는 약정해지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u></p> <p>4. <u>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납입지연시에는 은행은 추가여신 취급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u></p> <p>제8조 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에 대한 약정</p> <p>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종합통장기본계좌 및 당좌예금(이하 “모계좌”라 합니다)에 입금된 자금(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은 자동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p> <p>②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청구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 등의 자동납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는 것으로 합니다.</p> <p>③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제 1 조의 여신한도금액 범위내에서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곧 변제하거나 해당 모계좌에 변제를 위하여 입금하기로 하며, 입금된 자금은 미수이자 및 지연배상금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p> <p>④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그 때부터 대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정해진 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곧 지급하기로 합니다.</p> <p>⑤ 당좌대출의 경우,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어음·수표를 지급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구상채무를 지게 된 때에는, 이를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갚기로 합니다.</p> <p>⑥ 당좌대출의 경우, 제 6 조에 의한 감액·정지로 인하여 그 전에 본인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되더라도 이익없기로 합니다.</p>	<p>제6조 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에 대한 약정</p> <p>①~③ (좌 동)</p> <p>④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u>은행여신거래약관(기업용) 제7조 제2항에 따라 통지 후</u>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그 때부터 대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정해진 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곧 지급하기로 합니다.</p> <p>⑤ (좌 동)</p> <p>⑥ 당좌대출의 경우, 제 5 조에 의한 감액·정지로 인하여 그 전에 본인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되더라도 이익없기로 합니다.</p>	<p>조 체상</p> <p>여신거래약정서 (기업용) 약관 반영</p> <p>문구 수정</p>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⑦ 은행은 어음·수표의 지급거절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여신기간 만료일전에 발행한 어음·수표를 여신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p>	<p>⑦ (좌 동)</p>	
<p><u>제9조</u> 인지세의 부담 (생 략)</p>	<p><u>제7조</u> 인지세의 부담 (좌 동)</p>	<p>조 체상</p>
<p><u>제10조</u> 상환통화 및 환율 (생 략)</p>	<p>(삭 제)</p>	<p>해당사항없는 조항 삭제</p>
<p><u>제11조</u> 담보·보험 (생 략)</p>	<p>(삭 제)</p>	<p>해당사항없는 조항 삭제</p>
<p><u>제12조</u> 담보권 설정 (생 략)</p>	<p><u>제8조</u> 담보권 설정 (좌 동)</p>	<p>조 체상</p>
<p><u>제13조</u> 상환자격 유지의무 등 (생 략)</p>	<p><u>제9조</u> 상환자격 유지의무 등 (좌 동)</p>	<p>조 체상</p>
<p><u>제14조</u> 자료의 제출 등 (생 략)</p>	<p><u>제10조</u> 자료의 제출 등 (좌 동)</p>	<p>조 체상</p>
<p><u>제15조</u> 기타 특약사항 (생 략)</p>	<p><u>제11조</u> 기타 특약사항 (좌 동)</p>	<p>조 체상</p>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약정서(판매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p> <p>본인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위한 _____년 _____월 _____일자 여신거래 약정(이하 “원 약정서”라 한다)에 추가하여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p> <p>제4조 (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 ④ <u>대출금이 연체된 경우에는 지급기일로부터 기산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날까지 귀행의 은행계정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기업용) (포괄계약)</p> <p>제2조 (양도할 대상채권 및 피담보채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피담보채무의 범위</td> <td>은행과 판매기업 당사자 사이에 _____년 _____월 _____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및 추가약정서(이하 “여신거래약정”이라 합니다)에 따라 판매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 기타 여신거래약정과 관련된 일체의 채무</td> </tr> <tr> <td>기본계약</td> <td>물품 또는 용역등과 관련하여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_____년 _____월 _____일 체결한 _____계약 및 이에 부수하여 체결한(또는 체결하는) 일체의 계약 등 또는 구매기업과 은행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매출채권의 원인 행위 등</td> </tr> </table> <p>본인은 _____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통합약정서(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추가약정서(판매기업용),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포괄계약)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이를 약정함.</p> <p style="text-align: right;">본인 (인)</p>		피담보채무의 범위	은행과 판매기업 당사자 사이에 _____년 _____월 _____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및 추가약정서(이하 “여신거래약정”이라 합니다)에 따라 판매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 기타 여신거래약정과 관련된 일체의 채무	기본계약	물품 또는 용역등과 관련하여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_____년 _____월 _____일 체결한 _____계약 및 이에 부수하여 체결한(또는 체결하는) 일체의 계약 등 또는 구매기업과 은행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매출채권의 원인 행위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약정서(판매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p> <p>본인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위한 _____년 _____월 _____일자 여신거래 약정(이하 “원 약정서”라 한다)에 추가하여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p> <p>제4조 (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 ④ <u>대출금이 연체된 경우에는 지급기일로부터 기산하여 대출금 상환일 전일까지 원 약정서 제 1 조 제 1 항에서 약정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하기로 합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기업용) (포괄계약)</p> <p>제2조 (양도할 대상채권 및 피담보채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피담보채무의 범위</td> <td>은행과 판매기업 당사자 사이에 _____년 _____월 _____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및 추가약정서(이하 “여신거래약정”이라 합니다)에 따라 판매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 기타 여신거래약정과 관련된 일체의 채무</td> </tr> <tr> <td>양도할 대상채권</td> <td>물품 또는 용역등과 관련하여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_____년 _____월 _____일 체결한 _____계약 및 이에 부수하여 체결한(또는 체결하는) 일체의 계약 등 또는 구매기업과 은행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매출채권</td> </tr> </table> <p>본인은 _____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추가약정서(판매기업용),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포괄계약)]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이를 약정함.</p> <p style="text-align: right;">본인 (인)</p>		피담보채무의 범위	은행과 판매기업 당사자 사이에 _____년 _____월 _____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및 추가약정서(이하 “여신거래약정”이라 합니다)에 따라 판매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 기타 여신거래약정과 관련된 일체의 채무	양도할 대상채권	물품 또는 용역등과 관련하여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_____년 _____월 _____일 체결한 _____계약 및 이에 부수하여 체결한(또는 체결하는) 일체의 계약 등 또는 구매기업과 은행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매출채권	<p>문구 수정</p> <p>문구 수정</p> <p>문구 수정</p>
피담보채무의 범위	은행과 판매기업 당사자 사이에 _____년 _____월 _____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및 추가약정서(이하 “여신거래약정”이라 합니다)에 따라 판매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 기타 여신거래약정과 관련된 일체의 채무											
기본계약	물품 또는 용역등과 관련하여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_____년 _____월 _____일 체결한 _____계약 및 이에 부수하여 체결한(또는 체결하는) 일체의 계약 등 또는 구매기업과 은행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매출채권의 원인 행위 등											
피담보채무의 범위	은행과 판매기업 당사자 사이에 _____년 _____월 _____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및 추가약정서(이하 “여신거래약정”이라 합니다)에 따라 판매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 기타 여신거래약정과 관련된 일체의 채무											
양도할 대상채권	물품 또는 용역등과 관련하여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_____년 _____월 _____일 체결한 _____계약 및 이에 부수하여 체결한(또는 체결하는) 일체의 계약 등 또는 구매기업과 은행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매출채권											

2. 개정 시행일: 2016년 11월 30일

3. 기 거래고객에 대한 적용: 개정된 내용은 개정 시행일 이후 신규, 연장, 갱신 등 약정분부터 적용